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9-901
----------	-------

제출년월일 : 2025. 10. 1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992백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해당 사업은 관내 주택·건물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약 80%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안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및 제27조(보급사업)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 제35조(융복합지원사업 등) 및 제36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주요내용

- 사업명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주체
 - 전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위임)
 - 주관기관 : 안산시

- 참여업체(6개사)
 - 에스피브이(주)(주관업체) : 태양광
 - (주)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 태양광
 - 선다코리아(주) : 태양광, 태양열
 - (주)엠플러스공조 : 지열
 - (주)케빈랩 : 모니터링
 - (주)한국전력전문기술 : 설계, 감리
- 사업규모 : 신재생에너지 126개소, 1,332kW
 - 개소수 : 태양광 104개소, 태양열 2개소, 지열 20개소
 - 총용량 : 태양광 982kW, 태양열 162m², 지열 350kW
- 사업비 : 2,526,948천원(국 991,730 시 1,085,683 민간 449,535)
- 사업내용 : 건물·주택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용 약 80% 지원

□ 추진경과

- 공모사업 신청계획 수립 : 2025. 2.
-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 2025. 3.
-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 수요조사 : 2025. 3. ~ 5.
-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 2025. 6. 5.
-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 : 2025. 7. 9.
- 사업 최종 선정 : 2025. 8. 12.

□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본예산 편성 : 2026. 1.
- 협약 체결(안산시·한국에너지공단) : 2026. 2.
- 사업 진행 : 2026. 3. ~ 11.
- 사업 정산 및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 : 2026. 12.

- 비용추계서 : 【붙임 1】
- 협약서(안) : 【붙임 2】
- 방침결정문 : 【붙임 3-1】 , 【붙임 3-2】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4】
- 협약(동의) 안전 점검표

**안산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 제35조(융복합지원사업 등) 및 제36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모 선정 시) 국비 지원 규모에 따른 시비 편성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1호)
 : 국비 지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설정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77,413	2,077,413	-	-	-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계
세 입		991,730	-	-	-	-	991,730
세 출		2,077,413	-	-	-	-	2,077,413
민간자본사업보조		2,077,413	-	-	-	-	2,077,413
재원 조달		2,077,413	-	-	-	-	2,077,413
의존 재원	소 계	2,077,413	-	-	-	-	2,077,413
	보조금	991,730	-	-	-	-	991,73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1,085,683	-	-	-	-	1,085,683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 2]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안)

□ 사업명 : 2026년 안산시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비

- 총사업비 : 금 2,526,948천원
- 정부보조금 : 금 991,730천원
- 민간부담금 : 금 1,535,218천원(지자체/공공기관 1,085,683천원, 민간 449,535천원)

□ 사업기간 : 2026년 2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컨소시엄 대표 주관기관 : 안산시장
- 컨소시엄 구성원 : (주관기관) 안산시장
(참여기관) (태양광) 에스피브이(주) 대표 김성권
(태양광) 선다코리아(주) 대표 조장현
(태양광) (주)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대표 이창규
(태양열) 선다코리아(주) 대표 조장현
(지열) (주)엠플러스공조 대표 이영수
(모니터링) 케빈랩(주) 대표 김경학
(감리) (주)한국전력전문기술 대표 천미애
(수요자 단체명 또는 대표자) 대표

위의 융·복합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은 컨소시엄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대표자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을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융복합지원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 컨소시엄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관리) ①주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원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기간과 사업 완료 후 설비 운영기간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원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전담기관은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준공)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할 책임을 지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정부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70% 범위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장은 자연재해, 감염병 등 사회·경제적 위기시에 한하여 정부보조금의 80%까지 선금급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선금급 지급비율 이내에서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민간 입금내역 확인서 또는 약속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잔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진행 증빙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선금급 또는 잔여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주관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지방 자치단체일 경우 국가보조사업 전용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주관기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 집행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나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원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원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3에 규정한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정보보조금을 전담기관에게 반환하며, 민간부담금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 법 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전담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전담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원은 본 협약에 의한 보급사업이 소기의 사업 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컨소시엄 대표 주관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 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 다만, 기업신용평가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주관기관은 사용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지급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체상금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정부보조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해당시설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사용용도) 해당시설은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자가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첨 부

1. 융·복합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전용계좌 신고서 및 통장사본(주관기관)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주관기관) 각 1부.
5.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 협약서(계약서) 1부.

2026년 2월 1일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컨소시엄 대표 주관기관 : 안산시장 (인)